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 중앙부처의 지역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

이규용 · 강병식*

I. 머리말

그동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 및 평가는 주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되어 왔다. 중앙부처에서 기획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수행하는 사업들도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매개역할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자체예산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일자리사업의 수행 주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이 각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집행위탁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많지 않아 자율성이나 책임성에 기초하여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중간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달체계의 효율화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연장선에서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차원의 일자리 효율화가 갖는 의의 및 향후 방향과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의 유형을 통해 지역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범주를 파악한다. 제III장에서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유형을 기준으로 지역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IV장에서는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지역일자리사업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정리한다.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ky@kli.re.kr), 강병식=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icaria@kli.re.kr).

II. 전달체계와 지역일자리사업의 분류

지역일자리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수행 주체를 중심으로 정의하면 지역일자리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앞의 기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지역별로 일자리사업이 모두 공통적이지는 않다. 이는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이나 일자리사업의 환경 및 정책 대상에 대한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일자리사업을 포괄하는 범주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이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일자리사업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사업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정책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전달체계는 정책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들이 혹은 조직과 정책수혜자들이 상호 연관되어서 서비스가 창출되고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 공급기관과 정책수혜자 사이의 서비스 집행체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전달체계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에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개선은 개별 정책시행기관의 집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들에 대한 유기적 관리능력의 향상을 포함한다.¹⁾ 이런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며 유형별 사업평가를 통해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작업이다.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유형을 분류한 최근의 연구로는 최강식·문병기(2011)²⁾와 임상훈·윤윤규(2011)³⁾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지원사업의 기

1) 최강식·문병기(2011), 「일자리지원사업의 평가 틀」, 이규용 외,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89.

2) 위의 글, pp.103~123.

3) 임상훈·윤윤규(2011),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유형」, 윤윤규 외,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pp.12~24.

획주체와 관리주체 및 서비스 전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분류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가 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유형, ② 중앙정부가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유형, ③ 중앙정부가 중간전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사업을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3섹터 등 민간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유형, ④ 중앙정부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일자리사업을 집행시키는 유형, ⑤ 중앙정부가 부처 소속 지방행정청에 일자리사업을 위임하면 해당 지방행정청에서 민간기관에 집행을 위탁하는 유형, ⑥ 중앙정부가 민간기관에 일자리사업의 집행을 위탁하는 유형이다.

후자의 연구는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전문기관, 그리고 사업기관 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를 ① 강한 중앙집중형(공공기관/민간기관 위탁형), ② 약한 중앙집중형(지방사무소 위임형), ③ 분권화 절충형(지방자치단체-지방사무소 네트워크형), ④ 약한 분권화형(지방자치단체 위임형), ⑤ 강한 분권화형(지방자치단체 독립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사업의 특징 및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있다. 두 연구의 유형화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후자의 연구는 앞의 연구에서 간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강한 분권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의 유형별 분류는 지역일자리사업을 구조 기능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시설단체 등)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 어떤 주체가 일자리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는 정책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업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상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있거나 전국적인 획일화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집행이 효과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현장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지역위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가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나 집행과정의 효율성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분류한 전달체계의 유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에서 각 광역지자체에 교부금 형식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제공된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추가적으

4) 최강식·문병기, 앞의 책, p.89.

로 편성하는 일종의 매칭(matching)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이하 교부금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산하기관 등 다양한 위탁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이하 비교부금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사업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중앙부처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다(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이 세 유형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만 좁은 의미의 지역일자리사업의 범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수행하는 둘째 방식과 셋째 방식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⁵⁾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첫째 유형으로 분류한다.

III.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특징

1. 자료수집 개요 및 일자리사업 분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정보는 기획재정부가 취합한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이 자료는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나 실적은 제외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에 관한 최근의 정보는 국회예산정책처(2010)⁶⁾ 자료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는 중앙부처가 지자체에게 교부금 지원 및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예산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각 일자리사업에 대해 실제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 또한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일모아 DB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일모아 DB는 교부금 사업의 참여자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참여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여 지자체 자체사업 및 참여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지역 자체예산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들은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규용 외(2012 발간예정), 『지역일자리사업 DB구축 및 효율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

6) 국회예산정책처(20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편람」 참조.

이와 같이 지역 단위의 일자리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종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내용은 2011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일자리사업 DB구축 및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각 지역별로 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사업의 범주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틀인 OECD에서 분류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분류기준에 따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교부금 사업 예산내역은 자료수집 과정의 제약 등으로 정부의 공식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료의 수집은 실적기준과 예산기준을 모두 취합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금액은 예산 단위로 파악된 금액으로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교부금만 포함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출하는 예산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한 부서조차 각각의 파트(팀) 단위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연구진이 지역일자리사업 자료를 모두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둘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업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명칭이 다르고 예산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어 매칭사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다. 지역을 포괄하는 일자리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일자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료의 구축 및 평가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일자리사업의 범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해 몇 차례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2012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수는 총 183개(이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178개)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1년 상반기에 정비한 사업현황에 기초하고 있어 이 자료에 나타난 일자리사업은 153개이며 이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149개로 이 사업들이 분석대상이다. 이를 정책수단별로 보면 직접일자리창출정책 분야가 79개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고용서비스(27개 사업), 직업훈련(25개 사업), 고용장려금(12개 사업), 그리고 창업지원(6개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 예산은 8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부문(3조 9천억 원)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은 4조 9천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직접일자리창출정책이 2조 5천억 원으로 일자리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1조 1천억 원, 고용장려금 8천억 원, 고용서비스 3천억 원, 그리고 창업지원 1천6백억 원 순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의한 일자리창출 지원인원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분야 (1,214,847명)를 제외하면 5,766,969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를 통한 지원인원이 4,817,736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의 8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음으로 직접일자리창출 554,759명 (9.6%), 고용장려금 308,573명(5.4%), 고용서비스 72,459명(1.3%) 및 창업지원 13,442명 (0.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명, %)

	사업 수	예산	지원인원
직접일자리창출	79(53.0)	2,512,182(50.9)	554,759(9.6)
직업훈련	25(16.8)	1,124,114(22.8)	4,817,736(83.5)
고용서비스	27(18.1)	313,787(6.4)	72,459(1.3)
고용장려금	12(8.1)	823,434(16.7)	308,573(5.4)
창업지원	6(4.0)	158,678(3.2)	13,442(0.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	3,873,713	1,214,847
계 1	149(100.0)	4,932,195(100.0)	5,766,969(100.0)
계 2	153	8,805,908	6,981,816

주: 계 1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을 제외한 것이며, 계 2는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

2. 중앙부처의 비교부금 일자리사업

중앙부처가 예산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수행하는 비교부금 사업현황을 살펴보자.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49개 중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11개이다. 이를 정책수단별로 보면 직접일자리창출 46개, 직업훈련 21개, 고용서비스 26개, 고용장려금 12개 그리고 창업지원 6개 사업이다.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은 교부금 사업이 없으며, 고용서비스 또한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부금 사업이고 직업훈련도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부금 사업이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교부금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부금 형태로 수행된 직접일자리창출은 46개 사업에 9천5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참여인원은 15만 5천 명이다. 이는 전체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수의 58.2%이고, 예산 기준으로는 37.9%에 해당하며 지원인원 기준으로는 28.0%이다. 일자리사업 수는 절반을 웃돌지만 예산과 지원인원은 각각 1/3, 1/4에 불과하다.

〈표 2〉 중앙부처 직접 수행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

	사업 수	예산	지원인원
직접일자리창출	46(41.4)	951,831(28.3)	155,252(2.9)
직업훈련	21(18.9)	1,116,568(33.2)	4,816,324(89.8)
고용서비스	26(23.4)	309,087(9.2)	69,459(1.3)
고용장려금	12(10.8)	823,434(24.5)	308,573(5.8)
창업지원	6(5.4)	158,678(4.7)	13,442(0.3)
전 체	111(100.0)	3,359,598(100.0)	5,363,050(100.0)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해 집계.

직업훈련 분야는 21개의 사업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지원인원은 4백8십만 명이다. 일자리사업 수는 직업훈련 분야(25개 사업)의 84.0%이고, 예산과 지원인원은 각각 이 분야의 99.3%와 99.9%에 해당한다. 직업훈련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 예산의 집행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 분야의 사업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적 측면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나 전문적인 훈련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용서비스 분야도 직업훈련 분야와 마찬가지로 1개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수는 이 분야의 96.3%이고 예산과 지원인원은 각각 이 분야의 98.5%와 95.9%이다.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분야는 모두 비교부금 형태로 추진하며 중앙정부가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부금 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자.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유형별로 구분한 기준을 정리한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용 외(2011)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토대로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을 크게 사회서비스 사업과 비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한 후 각 분야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정책대상 및 서비스수혜 대상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돌봄노동 일자리, 경과적 일자리, 공공재 제공 일자리 등의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경력형성형 일자리, 채용보조금형 일자리,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일자리 일몰제형, 그리고 기타 일자리 등의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⁷⁾

7) 이규용 외(2011)는 EC가 직접일자리창출정책을 세부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비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일자리창출정책으

이 기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46개의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의 사업은 15개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31개의 비사회서비스 사업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교부금으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예산 총액은 9천5백억 원으로 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5천억 원(53.2%, 15개 사업)이고, 비사회서비스 일자리는 4천5백억 원(46.8%, 31개 사업)이다. 일자리사업 수는 비사회서비스업이 두 배 이상 많지만 예산은 사회서비스 사업이 5백억 원가량 많다.

앞에서 구분한 것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자. 사회서비스 사업 중 돌봄노동 일자리 유형은 전형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주로 취약계층이고 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과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상자가 특정의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일자리사업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의 일자리창출 및 경력지원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재 제공 일자리는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경과적 일자리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공공재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지원 정책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지원 정책의 경우 참여자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지만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재능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능 방재시스템 구축, 깨끗한 학교 만들기, 환경 지킴이 등 4개 사업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경력형성형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자의 경력형성이나 일자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글로벌 취업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다. 채용보조금형 일자리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장려금 성격이 강한데 여기에는 청년인턴 사업이 유일하다.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혹은 업무보조를

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정부의 일자리 현황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돌봄노동 일자리, 경과적 일자리 그리고 공공재 제공 일자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경력형성형 일자리, 채용보조금형 일자리,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일자리 일몰제형, 그리고 기타 일자리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이규용(2011), 「직접일자리 창출정책: 쟁점과 과제」, 『각국의 일자리지원 정책 사례와 향후 한국의 과제』(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122~125 참조.

위해 인력을 임시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소득 및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어업협정 이행, 취약농가인력 지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다.

일자리 일몰제 유형은 일자리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향후에도 공공부문에 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책수요가 소멸하는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대체로 이 분야의 일자리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업 참여자의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몰’성 특징이 있다. 이 유형에는 건설안전지킴이 사업, 국가기록물 정리, 국민연금 상담요원운영 인건비, 농축산물 검역검사, 전파자원 총조사 등 18개 사업이 해당한다. 그 외 위 분류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일자리 유형에는 월드프렌즈 코리아 사업이 있다.

세부 유형별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경과적 일자리 유형이 차지하는 예산이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는 4개에 불과하지만 자활사업에 투입된 예산(3천 9백억 원) 규모가 큰 점에 기인한다. 돌봄노동 일자리 예산은 6백억 원이고 공공재 제공 일자리는 5백억 원이다.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중에는 채용보조금형 일자리인 청년인턴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일자리 일몰제 유형(18개 사업, 1천2백억 원)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경력형성형 일자리(8개 사업)와 기타 일자리(1개 사업) 예산은 각각 8백억 원 수준이다.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3개 사업) 유형에 투입한 예산은 1백6십억 원이다.

〈표 3〉 중앙부처 직접 수행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유형	예산	비중
직접일자리창출 (중앙부처 수행 사업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15개 사업)	• 돌봄노동 일자리 (7개 사업)	60,649	6.4
		• 경과적 일자리 (4개 사업)	399,892	42.0
		• 공공재 제공 일자리 (4개 사업)	45,679	4.8
	소 계		506,220	53.2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31개 사업)	• 경력형성형 일자리 (8개 사업)	82,283	8.6
		• 채용보조금형 일자리 (1개 사업)	145,605	15.3
		•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3개 사업)	16,413	1.7
		• 일자리 일몰제형 (18개 사업)	121,231	12.7
		• 기타 (1개 사업)	80,079	8.4
	소 계		445,611	46.8
전 체		951,83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해 집계.

3.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교부금 사업)

다음으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배정하고 각 지방정부가 이에 연계한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현황을 보자.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로 이루어진 일자리사업은 38개이다. 교부금 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방정부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1조 6천억 원이고,⁸⁾ 일자리 지원인원은 403,864명이다. 중앙정부 직접 수행 사업과 비교해보면 총액 기준으로 예산은 중앙정부 직접 수행의 44.1%, 지원인원은 7.5% 수준에 그친다. 그렇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이 모든 정책수단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데 비해 교부금 사업은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의 교부금 사업의 예산과 지원인원은 중앙부처 직접수행에 비해 각각 1.64배, 2.57배 많은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교부금 사업을 정책수단 분야별로 살펴보면 38개 일자리사업 중 33개의 사업이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에 해당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는 각각 4개와 1개 사업에 불과하다. 직업훈련 분야에는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과 제주도 광특회계 사업(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사업),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농특회계)⁹⁾ 사업 등이 해당된다. 고용서비스 유형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지원 사업이 있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중 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33개 사업 예산은 1조 6천억 원이다. 이는 교부금 사업 예산 총액의 99.2%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규모는 전체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의 재정지원 예산 총액(2조 5천억 원)의 62.0%에 해당한다. 일자리사업 수로 보면 해당 분야 사업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규모는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일자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농특회계 및 제주 광특회계 포함)과 고용서비스에 투입한 예산은 각각 7,546백만 원과 4,700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일자리사업 수도 각각 4개와 1개이고,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 수 또한 두 분야를 합쳐 4,4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이들 분야에서 교부금 사업의 예산 비중이 낮은 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

8)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교부금 사업 예산은 전년(1,335,813백만 원) 대비 17.5% 늘어난 규모로 나타났다.

9) 농특회계 사업은 2010년의 경우 강원도, 충남, 전남북, 그리고 경남북 등 5개 도에 교부금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20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편람」 참조).

〈표 4〉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명, %)

	사업 수	예산	지원인원
직접일자리창출	33(86.8)	1,557,970(99.2)	399,452(98.9)
직업훈련	4(10.5)	7,546(0.5)	1,412(0.3)
고용서비스	1(2.6)	4,700(0.3)	3,000(0.7)
전 체	38(100.0)	1,570,216(100.0)	403,864(100.0)

주: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과 인원은 '사회적기업 육성(광특회계)'사업의 예산(2,381백만 원)과 지원인원(55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해 집계.

방사무소 조직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직접 수행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부금 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 절에서 언급한 유형 구분 기준을 적용하면 33개의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의 교부금 사업은 22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11개의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사업 수가 후자에 비해 두 배 많고, 이 분야에 해당하는 교부금 사업의 3분의 2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에 해당한다.

각 유형별 일자리사업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돌봄노동 일자리 유형에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11개 사업이 해당된다. 경과적 일자리 유형에는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등 6개 사업이 해당되며, 공공재 제공 일자리는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업 등 5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중앙정부 직접 수행 사업과는 달리 교부금 사업 중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와 일자리 일몰제형뿐이고 나머지 3개 유형은 해당사업이 없다.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도농교류활성화, 노인일자리사업지원(제주 광특회계 사업 포함),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산불방지대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이 있다. 일자리 일몰제 유형에는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구축(인건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해당한다.

다음은 교부금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 분야 사업의 유형별 예산 현황이다. 교부금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 분야의 예산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조 2천억 원이고 비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천8백억 원으로 직접일자리창출정책에 해당하는 교부금 사업 예산의 4분의 3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돌봄노동 일자리 유형의 예산은 7천억 원으로 이는 교부금 사업으로 집행되는 직접일자리창출 예산의 44.9%이고 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의 59.2%에 해당한다. 일자리사업 수도 11개로 가장 많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유형은 공공재 제공 일자리 유형(3천7백억 원)이다. 이 유형의 사업은 5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가장 적지만 예산 비중은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총액(11개 사업, 3천8백억)에 버금간다. 이에 비해 경과적 일자리 유형(1천1백억 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적다. 비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유형에 3천억 원(20.9%)이 배정되었으며 일자리 일몰제형에는 5백억 원(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86.5% 예산이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유형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 일몰제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3.5%이다. 여기서의 예산 및 지원인원은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지출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하는 만큼 이보다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표 5〉 교부금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유형		예산	비중
교부금 사업	직접일자리 창출 (33개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2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노동 일자리 (11개 사업) • 경과적 일자리 (6개 사업) • 공공재 제공 일자리 (5개 사업) 	699,541	44.9
				111,716	7.2
				371,025	23.8
		소 계		1,182,282	75.9
		비사회서비스 일자리 (11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7개 사업) • 일자리 일몰제형 (4개 사업) 	325,084	20.9
		50,604	3.2		
		소 계	375,688	24.1	
전 체				1,557,97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해 집계.

IV. 지역일자리사업의 의의와 쟁점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크게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전달체계 유형별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

의 기본적인 인식은 유사·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 혹은 수행기관의 장점을 살려 기능별로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며 이를 유기적인 연계하고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성과 제고와 예산의 효율성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일자리사업 및 이와 관련한 전달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일자리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일자리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정책수혜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은 지역 단위에서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행정기구는 일자리 참여자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가능하기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접근의 용이성이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는 중앙부처나 일모아 DB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참여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손쉽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사업이 관리되면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일자리사업의 통합관리 가능성이다.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은 부처별로 개별사업 단위로 기획되고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사업주체 간 기능적 연계가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은 이러한 기능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사업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면 정책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각 정책수단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의 통합적 관리라는 장점을 갖는다. 넷째, 각 부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 완결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려 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게 될 경우 전달체계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일자리사업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이다. 지역 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사업수행 주체, 주관기관의 역량이나 전문성 강화, 사업을 기획하는 중앙부처 간 조율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유형별로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상자 모집, 집행과정, 참여자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등의 과업이 수반된다. 둘째, 교부금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통한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되 해당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책정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부여한다. 셋째, 비매칭사업의 수행은 지자체의 행정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와 유기적인 결합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넷째,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한 기구의 운용이

필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 매뉴얼의 개발이나 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사업현황을 살펴보았다. 교부금 사업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사업방침에 기초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크며 또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교부금 사업과 비교부금 사업 간 그리고 같은 교부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업 간 사업수행의 성과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은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분석대상 사업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몇 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성격을 넘어 체계적인 연구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의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사업은 주로 직접일자리창출 유형이 많으나 훈련사업, 인턴사업, 창업지원 등 여타 분야의 사업들도 있다. 통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서비스 공급의 적절한 안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중앙부처 사업이 표준화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자율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특정 일자리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사업수행은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복성의 문제이기에 앞서 서비스의 공급확충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 예산정책처(20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
- 윤윤규 외(2011),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11), 「직접일자리 창출정책: 쟁점과 과제」, 『각국의 일자리지원 정책 사례와 향후 한국의 과제』(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1),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2 발간예정), 『지역일자리사업 DB구축 및 효율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중앙정부 직접 수행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유형	사업명	예산	부처명
사회 서비스 (15개)	돌봄노동 일자리 (7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재가복지지원)	18,611	국가보훈처
		방과후학교 운영	651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공헌일자리	2,040	고용노동부
		아동안전지킴이	7,19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사례관리)	11,854	보건복지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4,832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471	여성가족부
		소 계	60,649	
	경과적 일자리 (4개)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운영 제외)	385,332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2,376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장애인복지일자리)	6,048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6,136	교육과학기술부
		소 계	399,892	
	공공재 제공 일자리 (4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12,535	문화체육관광부
		공능 방재시스템 구축	8,996	문화재청
깨끗한 학교 만들기		150	교육과학기술부	
환경지킴이		23,998	환경부	
	소 계	45,679		
계			506,220	
비사회 서비스 (31개)	경력형성형 일자리 (8개)	글로벌 취업지원(글로벌인재양성)	28,54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7,186	고용노동부
		글로벌인턴	23,099	교육과학기술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R&D)	6,093	농촌진흥청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운영)	2,568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인턴)	7,920	여성가족부
		ODA 기업 인턴 / KOICA 사무소 인턴	6,870	외교통상부
		소 계	82,283	
	채용 보조금형 (1개)	청년인턴	145,605	고용노동부
		소 계	145,605	
	지역사회 지원형 일자리 (3개)	어업협정이행	353	농림수산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 가사도우미사업)	5,460	농림수산식품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0,600	국토해양부
	소 계	16,413		

〈부표 1〉 계속

	유형	사업명	예산	부처명
비사회 서비스 (31개)	일자리 일몰제형 (18개)	건설안전지킴이 사업	827	고용노동부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600	법무부
		국가기록물 정리	5,834	행정안전부
		국민연금 상담요원운영 인건비	5,270	보건복지부
		농산물안전성조사	864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	11,144	농림수산식품부
		동축산물검역검사(인건비만)	202	농림수산식품부
		부서관인건비 - 유급지원병('09 추경)	33,120	국방부
		산업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R&D)	2,561	지식경제부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수산시험연구, 인건비만)	8,327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기술개발(R&D)	2,620	농림수산식품부
		영어회화강사	-	교육과학기술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운영)	33,939	보건복지부
		전파자원 총조사	2,360	방송통신위원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	7,058	여성가족부
		총어획량(TAC)제도운영(수산자원조사원 운영)	1,735	농림수산식품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운영)	2,539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 피해 예방)	2,231	여성가족부
	소 계	121,231		
	기타 (1개)	월드프렌즈 코리아	80,079	외교통상부
		소 계	80,079	
계			445,611	
전 체			951,831	

〈부표 2〉 교부금 사업 중 직접일자리창출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유형	사업명	예산	부처명
사회 서비스 (22개)	돌봄노동 일자리 (11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4,251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	100,217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32,506	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서비스(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22,065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 육성	161,506	고용노동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4,467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보조)	40,189	여성가족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5,775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장애아동재활 치료)	48,111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15,15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35,300	보건복지부
	소 계	699,541		
	경과적 일자리 (6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21,848	문화체육관광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8,243	행정안전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장애인행정 도우미)	18,339	보건복지부
		정보화마을조성(경상)	1,221	행정안전부
		정신보건센터운영	12,065	보건복지부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50,000	문화체육관광부
	소 계	111,716		
	공공재 제공 일자리 (5개)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5,85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5,481	문화재청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방문보건사업활성화)	31,612	보건복지부
산림서비스증진		34,245	산림청	
숲가꾸기		293,837	산림청	
소 계	371,025			
계		1,182,282		
비사회 서비스 (11개)	지역사회 지원형 일자리 (7개)	노인일자리사업지원(제주 광특회계 포함)	148,642	보건복지부
		도농교류 활성화(마을사무장 채용지원)	2,650	농림수산식품부
		산불방지대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7,091	산림청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	1,440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4,400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배치지원	13,245	문화체육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7,616	환경부
	소 계	325,084		
	일자리 일몰제형 (4개)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4,52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순수인건비)	15,381	여성가족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9,437	농림수산식품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장애인체용 등)	1,263	여성가족부
	소 계	50,604		
	계		375,688	
전 체		1,557,970		